

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2904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. 2. 27.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25. 2. 27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25. 3. 17.

기획행정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설명자: 행정과장 김종완)

가. 개정이유

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「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「고성군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로 전부개정 중에 있음.

이에 따라 이 조례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 간 중복 및 충돌을 방지하고,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국장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○ 제명 변경

- (현행) 「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

- (개정) 「고성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」

○ 다문화가족 관련 내용 삭제(모든 안)

○ 정의에 대한 사항 구체화(안 제2조)

○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대한 사항 명확화(안 제5조·제6조)

○ 외국인주민 지원 협의회에 대한 사항 보완(안 제7조~제12조)

다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: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3조

○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없음

○ 협의

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 특이사항 없음
[복지지원과-3859(2025. 1. 24.)호]

조례안	수정안(검토의견)	검토결과
☐ 해당조항 : 제4조(군수의 책무) 제2항 ⇒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	☐ 해당조항 : 제4조(군수의 책무) 제2항 ⇒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<u>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</u> 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	☐ 검토의견 미반영 ⇒ 실태조사는 외국인주민의 다양한 특성을 파악하여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으로 성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조사범위를 불필요하게 제한하여 연령, 직업, 거주 형태, 경제적 상태 등 다른 중요한 요소들이 고려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반영
☐ 해당조항 : 제9조(협의회의 구성)제3항 ⇒ 당연직 위원은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하며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	☐ 해당조항 : 제9조(협의회의 구성)제3항 ⇒ 당연직 위원은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하며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.	☐ 검토의견 미반영 ⇒ 「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제5항에 기재되어있으므로 미반영

○ 기타

1) 입법예고: 고성군공고 제2025-115호

가) 예고기간: 2025. 1. 20. ~ 2025. 2. 10. (21일간)

나) 예고결과: 특이사항 없음

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4) 신·구조문대비표: 해당사항 없음

5) 비용추계(미첨부 사유)서: 불임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 장혜정)

- 「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의 다문화가족 관련 내용이 「고성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-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.
 - 제명 변경
 - 「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 → 「고성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」
 -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 - 조례의 개정 취지를 명확히 하고, 용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정의하였음.
 - 외국인주민의 지위 및 군수의 책무(안 제3조~제4조)
 -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의 지위를 규정하고, 군수의 책무를 명확히 하였음.
 -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(안 제5조~제6조)
 -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음.
 -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(안 제7조~제13조)
 - 협의회의 설치, 기능, 구성, 운영 및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 - 업무의 위탁 및 단체에 대한 지원(안 제14조~제15조)
 -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- 상위법령 검토 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,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5. 3. 17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